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2019. 12. 20.(금) 15:0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당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2019. 12. 20.(금) 15:0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당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퍼낸이_ 오경석

역은이_ 홍규호

퍼낸날_ 2019. 12.

퍼낸곳_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_031_492_9347

전송_031_492_9349

누리집_www.gmhr.or.kr

꾸미고 찍음_윤기희 (010. 4921. 435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개발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 인권 상담과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방안 연구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Hi,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CONTENTS

- 1
조사개요
- 2
설문조사
- 3
면접조사
- 4
전문가조사
- 5
시사점과 시책제언

연구참여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비고
연구책임자 (오경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계 및 진행총괄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연구원 (김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 분야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우수사례 분석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의학적 쟁점들과 건강권 보장 방안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양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추계를 위한 방법론 설문 조사 설계 및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이경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회계지원 조사 대상자 발굴 및 협업 진행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연구원 (이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건강권 관련 쟁점 분석 설문 및 면접 조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연구원 (이탁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법제 검토 건강권 지원을 위한 근거 법규 제안 	재단법인 동천
연구원 (최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선행연구, 해외 사례 및 정책 분석 설문 및 면접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보조원 (박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연구 진행 및 조사 지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시책 제언

선행연구분석

국내외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추정 관련 문헌	국내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관련 문헌	국내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정책 문헌
<p>설문조사</p> <p>미등록 이주아동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하 미등록 부모 340명, 동거자녀 482명 : 건강권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 <p>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지원 단체 실무자, 공무원, 보육교사 등 103명 :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 	<p>면접조사</p> <p>미등록 이주아동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32명 : 건강권 실태 및 정책적 요구 등 <p>이해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지원단체 실무자, 보건소 공무원 등 51명 : 정책 방향 및 과제 등 	<p>전문가조사</p> <p>활동가, 연구자, 교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회, 33명 참가 :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결과 활용 방안 등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정책방안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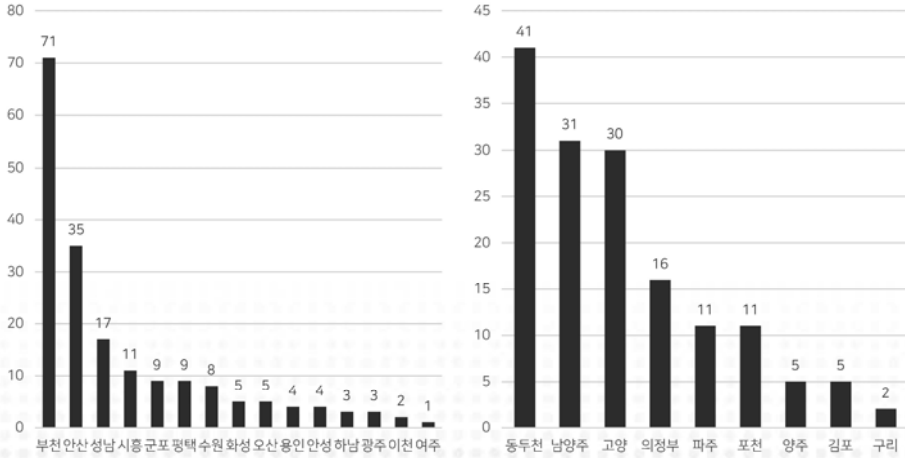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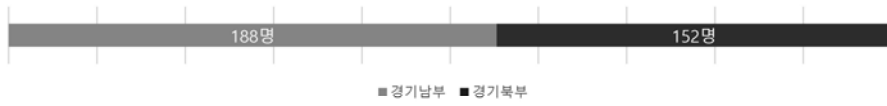
☑ 시사점과 시책 제언 : 5개 범주 14개 과제



- 도내 미등록 아동의 부모 340명, 자녀 482명(국내출생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 광범위한 관련 행위자 집단이 참여
 - 468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은,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최대 27.5%, 최소 11.7%에 해당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관련 실
 - 중적인 실태 조사
- 건강(권)에 대한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 근거함. 건강(권)은 보건 의료, 보육, 교육, 노동, 주거, 사회보장 등 보편적인 삶의 차원들과 연동
- 발굴과 접근이 핵심인 이주민 조사에 특화된 학제적, 협업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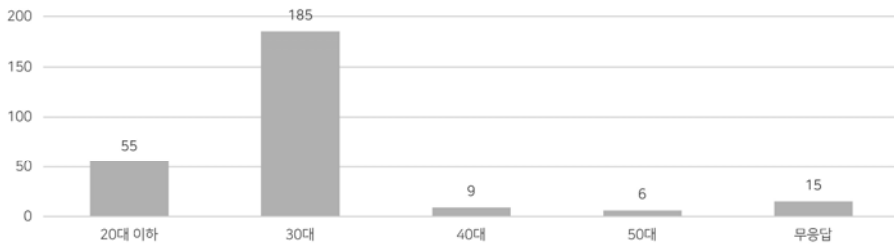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담당자	주요조사지역
1	구리엑스더스	이은옥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파주, 등
2	의정부엑스더스		
3	파주엑스더스		
4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김설이	남양주
5	두레방	김조이스	동두천, 평택
6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송연순	부천
7	성남시외국인주민지원복지센터	김해정	성남
8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수원, 안산 외
9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부천 외
10	안산빈센트의원	김 베네딕타	안산
1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박희	의정부, 양주, 고양
12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홍욱	포천, 파주 외
13	파주살롱의집이주민지원센터	김현지	파주
14	포천이주민지원센터	김두승	포천
15	(사)아시아의창	이영아	군포, 안양
16	부천시주민지원센터	황지연	부천
17	한국산업인력공단 서포터즈	김미연	안산, 시흥 외
18	난민공동체	도카스	안산, 시흥, 동두천, 평택 외
19	통번역사 교육 수료생	서수빈	군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학생	온드라흐비야르	부천, 김포, 성남 외
21	통번역사 교육 수료생	자리나	안성, 평택
22	통번역사 교육 수료생	와라편차이자론	안성, 평택

현재 거주지



연령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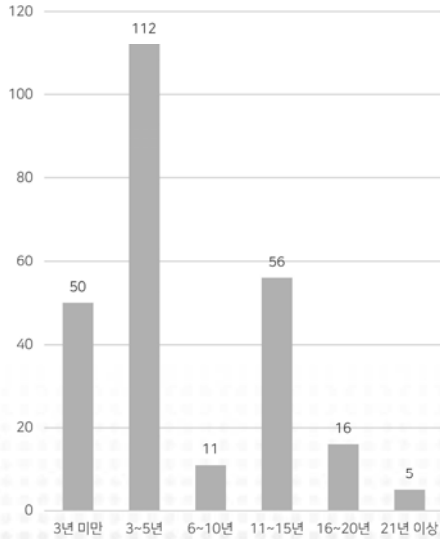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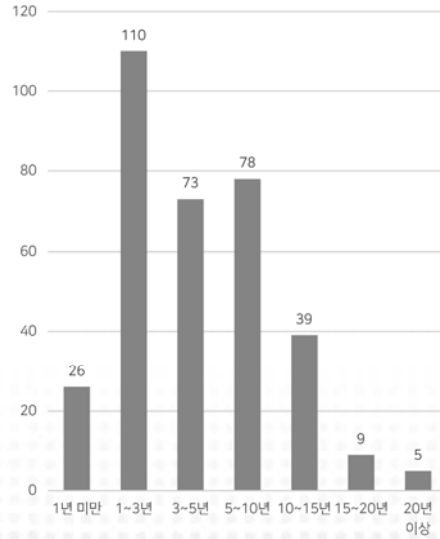
연령	빈도(%)	연령	빈도(%)	연령	빈도(%)
0	29(6.3)	7	20(4.4)	14	10(2.2)
1	45(9.8)	8	31(6.8)	15	5(1.1)
2	49(10.7)	9	26(5.7)	16	4(0.9)
3	48(10.5)	10	23(5.0)	17	4(0.9)
4	42(9.2)	11	12(2.6)	18	2(0.4)
5	45(9.8)	12	12(2.6)	20	1(0.2)
6	39(8.5)	13	9(2.0)	21	1(0.2)
합계				457(100.0)	

한국 거주기간

●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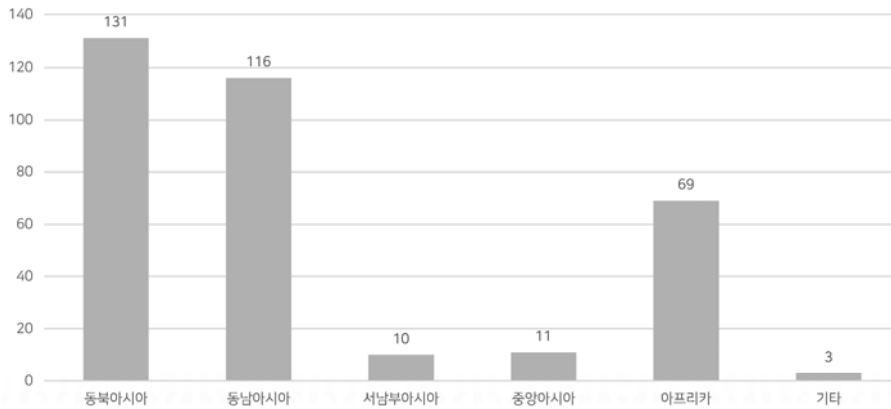


● 비자없이 지낸 기간



출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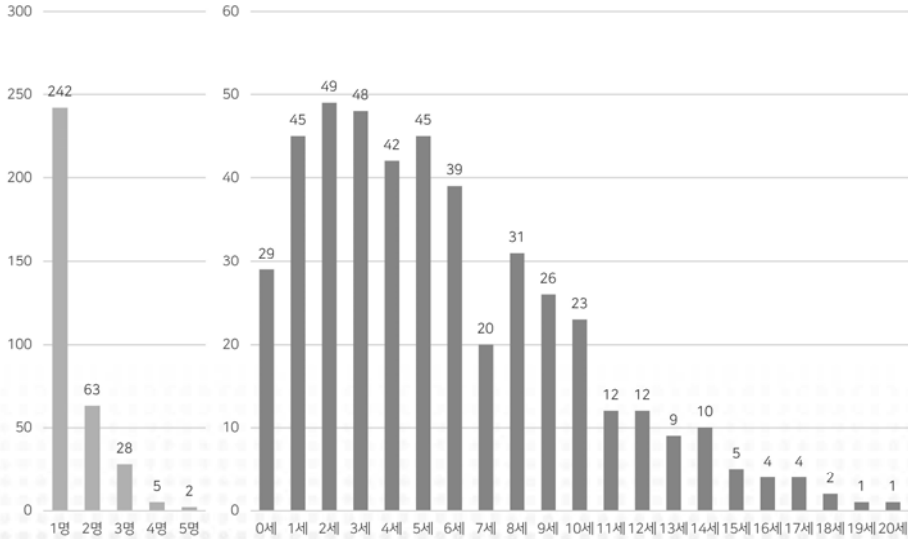
● 출신국가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2개(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이외에 17개국가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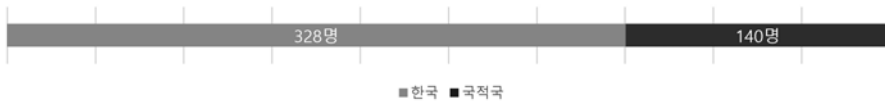
동거자녀수 연령분포

● 동거자녀수 ● 자녀 연령대 분포



11

자녀 출생, 성별, 교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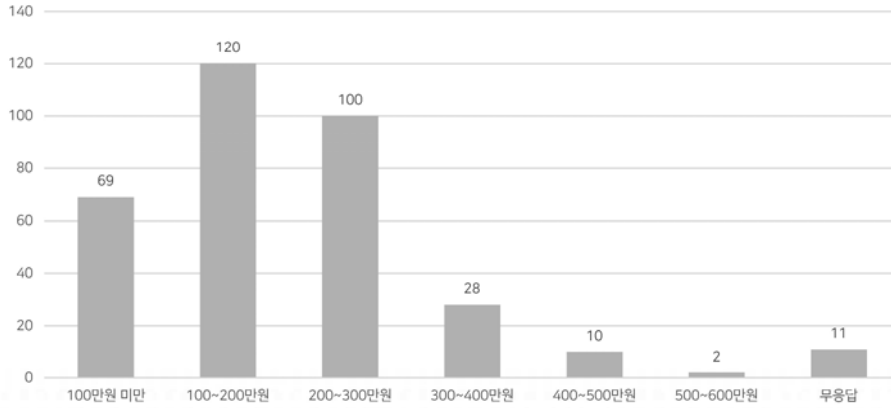
남	여	전체
248(52.8)	224(47.2)	470(100.0)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비학교 대안학교	다니다 않음	합계
152 (33.3)	56 (12.3)	107 (23.4)	22 (4.8)	8 (1.8)	1 (0.2)	111 (24.3)	457(10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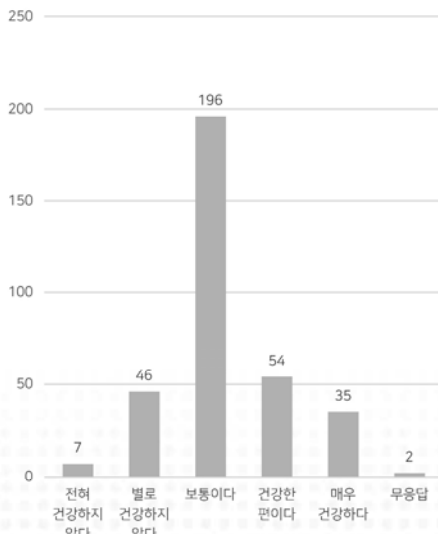
가족수입

● 가족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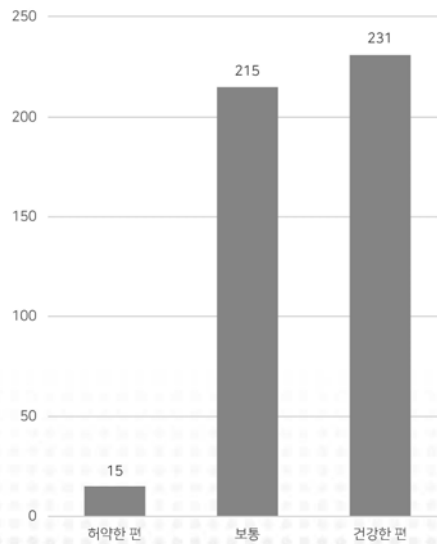


건강상태

● 미등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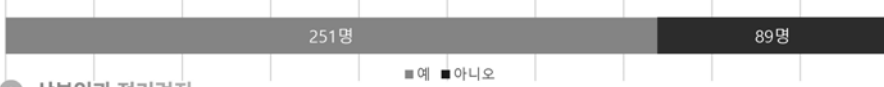


● 미등록 아동



산전산후 건강관리

○ 한국에서 임신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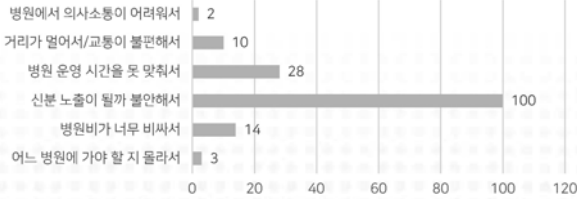
○ 산부인과 정기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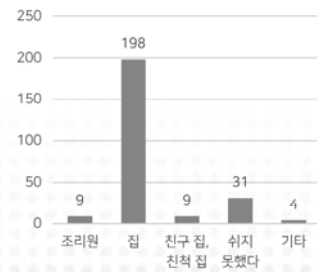
○ 조산여부

예	아니오	전체
37(8.5)	398(91.5)	435(100.0)

○ 산부인과 정기검진 받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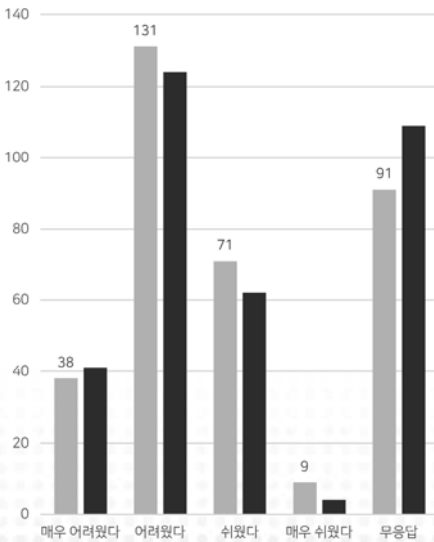


○ 산후조리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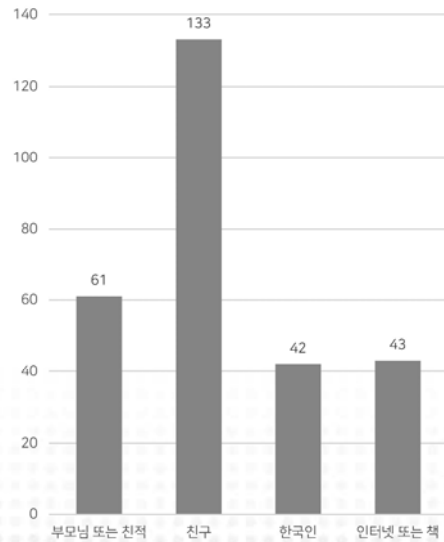


정보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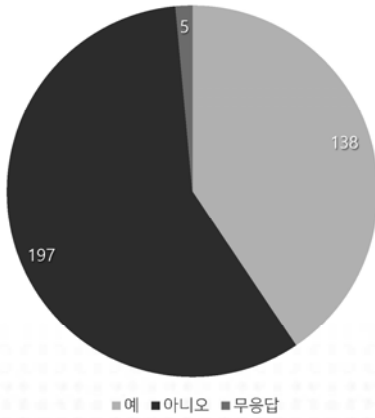
○ 정보습득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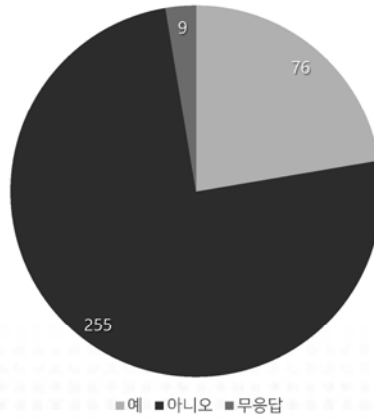
○ 정보습득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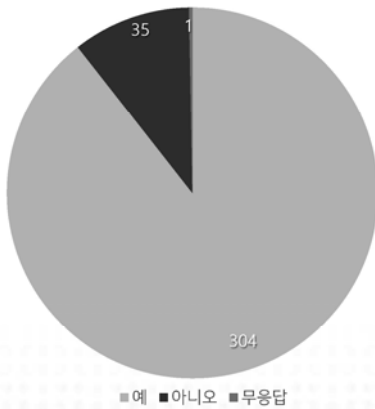
● 무료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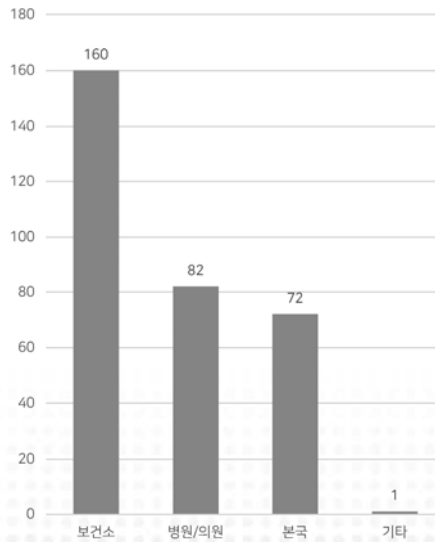
● 예방적 치과검진



● 국가 필수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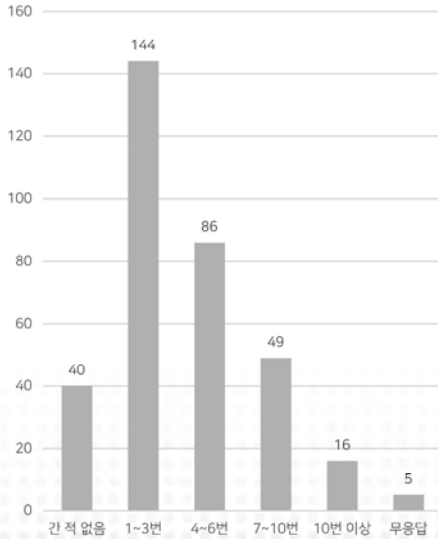


● 예방 접종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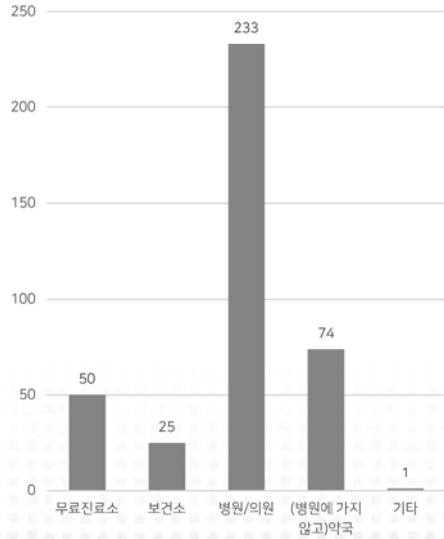


의료기관 이용실태

○ 지난1년간 병원 방문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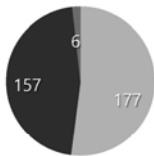


○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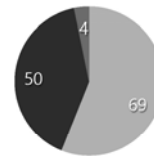
의료기관 이용실태

○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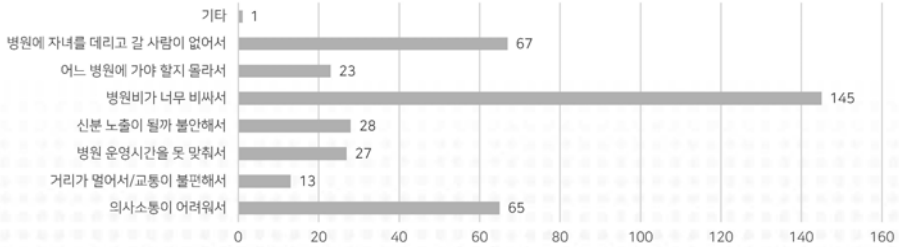
■ 예 ■ 아니오 ■ 무응답

○ 자녀가 치통호소시 병원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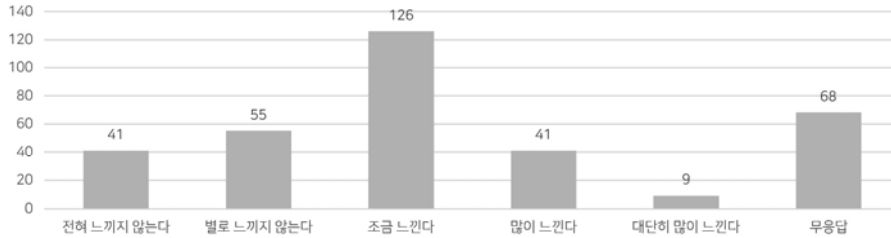


■ 예 ■ 아니오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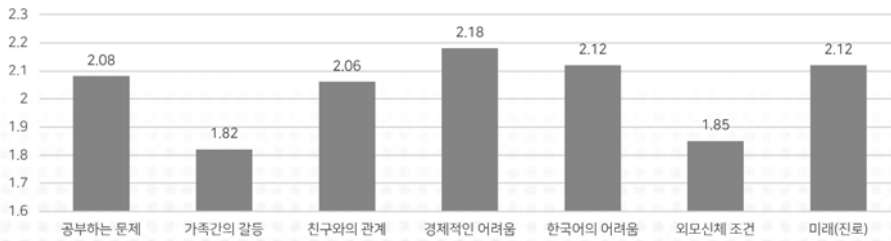
○ 병원에 못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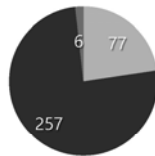
●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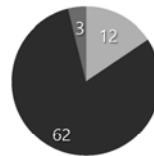


● 자녀의 심리치료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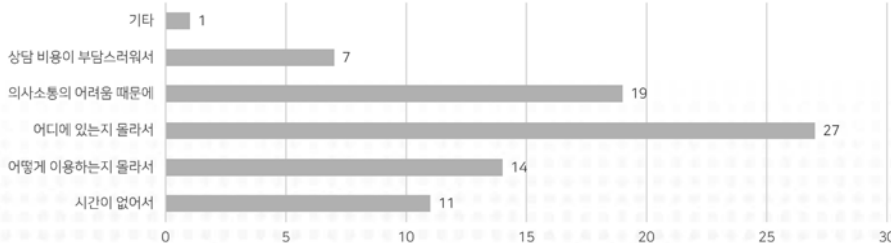
■ 예 ■ 아니오 ■ 무응답

● 심리치료 전문기관 이용경험



■ 예 ■ 아니오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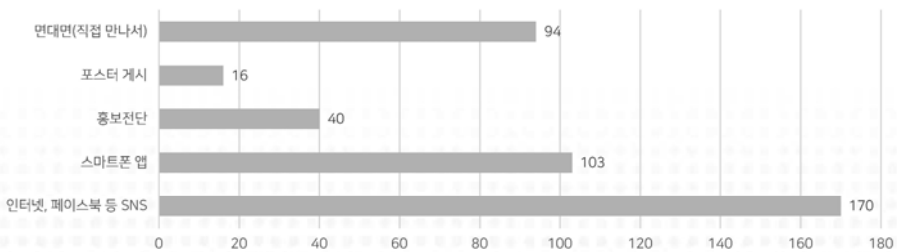
● 이용안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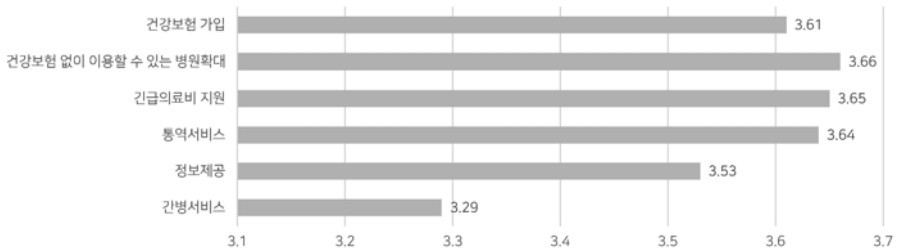
알고있는 보건서비스

이주민 보건서비스	빈도(%)
보건소에서 만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 접종	188(40.4)
민간단체(NGO)에서 제공하는 무료 진료	81(17.4)
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76(16.3)
아는 것이 없다	120(25.8)
전체	46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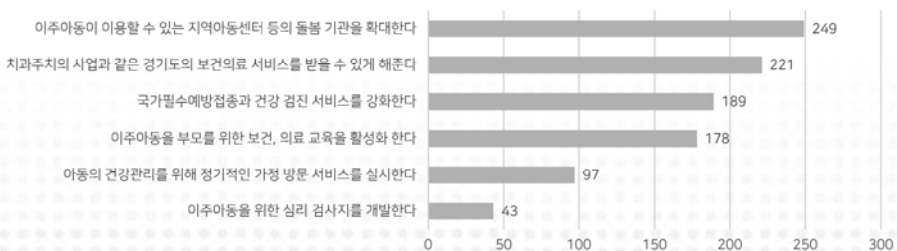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제공방식



한국에서 의료기관 편히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연번	인터뷰이	한국거주기간	자녀나이	거주지역
1	R	17년	13세	부천시
2	L	16년	3세/8세	수원시
3	D	8년	9세	부천시
4	A	13년	10세	부천시
5	Ag	-	1세/3세/18세/21세	안산시
6	C	-	7세/11세	부천시
7	K와 자녀	8년	14세	부천시
8	M	3년	8세/11세/14세	부천시
9	B	15년	13세/14세	부천시
10	Ms	15년	11세/15세	시흥시
11	Y	9년	3세	안산시
12	S	5년	1세/2세/3세	동두천시
13	O	5년	4세	동두천시
14	Co	5년	4세/20세	동두천시
15	An	8년	3세/11세/13세	부천시
16	J	11년	2세	포천시

25

연번	인터뷰이	한국거주기간	자녀나이	거주지역
17	Da	11년	2세	포천시
18	P	12년	1세	포천시
19	N	3년	1세/8세	부천시
20	Bu	9년	2세/3세/9세	고양시
21	Ar	8년	3세/7세	고양시
22	L	16년	4세/6세	의정부시
23	Ca	20년	12세/23세	부천시
24	F	12년	5세/26세	부천시
25	G	5년	1세	동두천시
26	Sh	10년	4세/8세	동두천시
27	Rl	9년	3세	동두천시
28	Le	10년	8세	동두천시
29	Al	6년	1세	동두천시
30	Na	5년	2세	안성시
31	Gw	12년	1세/7세	평택시
32	Jd	15년	14세	평택시

26

구분	기관명	인터뷰이 수
공공부문	안산시, 경기도, 국가인권위, 시흥시, 법무부, 안산단원경찰서	6
교육 및 보육	이천 효양중학교, 몽골어린이집, 안산 원곡고등학교, 시흥 시화중학교, 안산 선일중학교, 안산 원곡초등학교, 남양주 천마초등학교, 포천 평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부천 밀알어린이집, 글로벌키즈센터, 경기도교육청,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군포 아시아의 장	13
보건의료	안산빈센트의원, 안산 상록수보건소,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의료원,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카톨릭은평성모병원 소아정신과(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세종)	7
지원단체	고려인지원센터 미르(안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 엑소디스, 동두천 로엠이주민센터, 법률사무소 지율, 파주 살롬의 집,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경기수원다누리콜센터, 성남이주민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 글로벌이선센터, (사)국경없는 마을, 천주교의정부교구, 파주엑소덱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김포이주민센터	19
당사자 커뮤니티	수원이주민센터(미안마), 생각나무(중국), 스리랑카공동체, 줌어 난민공동체, 베트남공동체	5
근린	원곡동통장협의회	1

27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한국인, 그런데 왜 한국인처럼 못 살죠?”

“밥 먹는 거는 고기, 진짜 큰일 아니면 김치 있으면 아이들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네 김 있으면 밥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아기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길에서도 만나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사람 아닌데?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Ms최10)

“애들도 지금 **말 아예 모르고요.. 한국말을 그냥 하니깐.. 또 **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에 가서 살까? 그러면 싫어. 그러더라고요.”(L이22)

“내가 말했어. 우리 *** (보호자 출신국) 갈까? 엄마, 나는 안가. 엄마 가면 나 혼자 여기(한국) 살아요.”(A이4)

28

“똑 같은 아이일 뿐인데, 안되는 게 많아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등록번호가 없다고 해서 (학교 건강 검진) 안 하는 때가 많았어요.”(C최6)

“큰애는 2년 전인가 아동학대를 당했었고요.. 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뭐 경찰 불러서 뭐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왜냐면 불법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L이22)

29

“의료시설 이용, 제 때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열나와. 엄마 병원 가야 돼. 언제 조금 아파 기다려, 기다려요. 계속 계속 병원 안돼요. 언제 열 있어요. 병원 가요. 많이 아파 아니면 병원 안 필요해요.”(R이1)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면 ‘안돼요 안돼, 카드를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죠.”(Ag최5)

“소아과에서 보통 한번 얘기 감기 걸리면 4만원, 5만원 정도 들어요... 육아비용 거의 한 달에 백만 원, 백십만 원 들지요.”(Da최17)

“1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만원도 낼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싶은데... 건강보험만 있으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역 있는 병원 있으면 좋아요.”(C최6)

“왜냐면 아이가 출생등록 받으면 다 아이처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왜냐면 보험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 먼저 그거는 제일 문제예요.”(Ms최 10)

30

미등록이 되는 경로, 다양합니다

- 다양한 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고용허가 등)였던 보호자의 체류기간이 도과한 후 태어나는 경우(C최6, Da최17, Ar이21, Bu이20, F이24)
- 사업장 이탈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경우(G숙25, Sh숙26, Le숙28, Al숙29)
- 난민 불인정 후 체류중인 보호자로부터 태어나는 경우(K이7)
- 일시보호해제 후 미귀자인 보호자로부터 태어나는 경우(Ca이23)
- 가정 해체로 인해 보호자의 합법적인 체류가 무효화된 후 태어나는 경우(M이8, An이15) 등

31

“누구나”에 포함될 수 없는 아이들

“학교에 가도 학교는 없다. 어디에도 뭐는 없다. 다 없다, 없다. 있기는 있지만 없다..
있긴 있는데 나라도 없고, 학교도 없고, 다 없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투명인간’...(선28)

“국적이 있는데 미등록인 경우도 있는데, 국적도 없고 미등록이고 이런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애들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존재를 확인받을 길이 사실은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
면 법적으로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신분증도 없는데 애가 태어난 것도 증명을 못하는데.. 누구나 차별
없는 경기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누구나’가 아닌 거예요.”(가42)

32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예요”

“여기 미등록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 (보호자 출신국)은 더 몰라요.” (설18)

“한국인이예요 얼굴만 다르지. 뺨속까지 한국인이예요.” (일50)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의 문화나 모든 생활이 좋은데 자기는 *** (보호자 출신국), *** (보호자 출신국의 주류 문화) 이런 쪽은 모르고 가기 싫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설15)

“(보호자가) 이슬람인 애임에도 불구하고... 두껍게 있는 통고기 햄을 너무나 좋아하고 지리산 흑돼지를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아이(쵸).” (일50)

33

“지자체 차원의 건강권 지원,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차별없는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채11)

“이게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37)

“솔직히 아이는 죄가 없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주면 전부다 다 그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하고 싶어 해요, 거의 99.9%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본인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한테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이, 그게 우리나라가 됐건 외국이 됐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채9)

34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누구나’가 되어야하고 누구나라는 게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가 뭔가 건강권이 개선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정책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한다고 봐요”(가42)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는 출생등록. 출생등록이 건강 뿐 만아니라 모든 사회보장의 기본이잖아요.”(설14)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설16)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든 수급권자와 같은 수준은 되어야될 것 같고, 그건 지자체에서 그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죠...”(일47)

35

‘무임승차론’ 과 공감대 형성

“말도 안 되죠. 그건 외국인 혐오 감정이죠. 현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하기 싫은 불법체류를 하는 거죠. 황당해서..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바탕으로 깔고 그러는 거 같아서 문제제기의 수준도 안 된다고 봅니다.”(이25)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을 못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을 무슨 도구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불법을 연장시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이20)

“가장 중요한 게 공론화예요. 이게 공론화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선29, 은33)

36

개요

연번	주제	일시	내용	참석자(연구진 및 집행부 제외)
1	척수보고회	2-27 10:00-12:00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방법, 결과 활용 방안	김미선((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박건희(안산시상록수보건소), 김성진(행정안전부), 권순길(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조남윤(안산시글로벌법정소년센터), 김성희, 이명신(안산빈센트의원), 이영하, 조효화(안산시)
2	현장 전문가 간담회	3-22 13:00-15:00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개선 방안(시책제언), 조사대상자 발굴과 조사 참여 협조	김설이(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영아((사)아시아의장), 송연순(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최평수((사)국경없는 마을), 오영미(오산이주민센터), 이은옥(천주교의정부교구), 조혜숙(성남이주민센터)
3	교사 간담회	4-7 16:00-18:00	학교 안전공제회, 보건소 예방접종, 정신건강문제, 치과 치료, 부모 교육의 필요성, 학교 내 통역 지원의 필요성	공희경(선일중학교), 김광민(시화중학교), 김미(군서초등학교), 김정아(원곡초등학교)
4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회의	5-31 14:00-16:00	외국인 인권 관련 법규 제정의 반대 논리와 대응 전략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우삼열(아산시주노동자센터), 김현삼(도의원)
5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7-17 14:00-16:00	정책대상과 업무 범위 확장 필요성 및 정책사각지대 해소 방안	최서리(IOM이민정책연구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석원정(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김예진(법률사무소 지움)
6	조사원 간담회	7-26 14:00-16:00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및 아동의 건강권 실태 및 개선방안	김설이(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온드라흐바야르(한국학중앙연구원), 도카스(난민공동체)

시사점

- 국내 미등록 아동 상당히 대규모로 존재, 향후 미등록 아동 규모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등록 부모의 국적 매우 다양(29개국), 468명의 아동들 가운데 65%는 0세에서 6세에 이르는 미취학 어린 아동, 70.1%는 국내 출생자들
- 국제사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매우 절실한 과제로 인식**
 - 체류< 권리, 국적 < 거주지 : 유럽의회(2013), 유엔아동권리협약(2017)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에
- 계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보장되어야함**
 - 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절대다수 동의,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가 반대의 논거를 압도함

구분	반대 논거	필요 논거
행정의 주체	국민	실질적인 한국인
법적 지위	불법	아동의 귀책이 아님
무입승차론	성인 불법체류자 양산	비현실적인 상상
지자체 주도의 지원	상위법의 부재로 불가능	자치입법권의 범위

시사점

- **미등록 가정 산모와 아동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매우 열악**
 - 월평균 가족 수입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정도, 산모의 산전수진율, 아동의 건강 상태, 미충의료율, 필수예방접종율 모두 매우 열악
 - 미등록 아동 건강 불평등의 요인은 매우 다양했으므로, 그들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시책은 의료, 보건 분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아동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의료제도의 경우에도 '제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권이 매우 제약받고 있었음**
 - 국가예방접종제도(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 미등록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도로 부터 당사자의 다수가 배제되어 있음

- **몇몇 주제에 있어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 입장 차이 존재**
 - 향후 시책 설계 및 개발, 시행 과정에서 조율될 필요

가이드라인

- **아동·청소년기는 생애과정의 건강과 발달에 핵심적인 시기**
- **아동의 건강권은 전생애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에 대한 투자 효과 : 수혜받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 아동이 속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화목에 기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의료비 감소, 사회 안전의 향상, 세금을 포함한 공공기금의 확충, 국가의 인간개발과 경제성장의 동력(노벨상 수상자 헤크만)**

보편성	비례성
<p>도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최선의 출발선에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정책의 대상에 미등록 아동 포함</p>	<p>일반 아동에 비해 건강권 지원의 필요가 더욱 크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미등록 아동을 주요하며 핵심적인 정책 수요자로 설정</p>

범주	시책의 목록
법과 제도의 개선	- 출생등록(거주지 신고)제 - 건강보험 가입 및 수급 자격 인정
기존 제도의 활용 : 정책과 실행의 괴리 해소를 통한 접근권 보장	- 필수예방접종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 산후조리 지원 - 초동치과주치의 - 드림스타트
건강불평등 예방 및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 방과후 돌봄 지원 : '경기 마을 안심포터' 활용 - 심리 정서 지원
전달 체계 및 연계 활성화	-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 - 교육권과의 연계 강화
법국가, 범정부, 범시민사회 이주거버넌스의 구축	- 정치적 공론장과 '다도합' 사무국 운영 - 통계DB 구축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공동 대응 - 국제기구 가입 및 관련 대사관과의 연계 강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진 일동-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제1차 포럼]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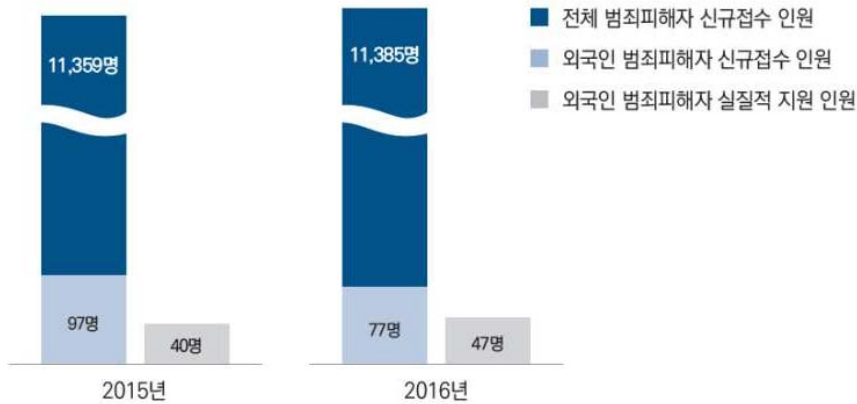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가.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 및 지원 인원 현황

- 1) 전국 ‘범피센터’의 2015년, 2016년 외국인 범죄피해자 신규접수인원은 각각 97명과 77명으로서 전체 신규접수인원(2015년도: 11,359명, 2016년도: 11,385명)의 0.8%, 0.7% 수준에 머무름.
- 2)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41%), 2016년도에는 47명(61%)에 불과한 실정임.



<그림 43>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규접수 및 지원인원(2015.2016년)

나.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거주인구 대비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

- 1)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2016년 이후 전국 주민등록인구수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수인원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
- 2) 특히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이 주민등록인구에 비하여 범죄피해 발생률이 높은 경제 활동인구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심각하게 낮은 상태임.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특성

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

- 1) 2015년과 2016년 동안 전국 ‘범피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모두 87명이며, 이 중에서 남자는 42명(48.3%)이고 여자는 44명(51.7%)임.
- 2)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60대의 비율은,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와 비교하여 더 낮고, 30대의 비율은 현저하게 높은 상태임.
 - 30대가 37.9%(33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대가 24.1%(21명), 40대가 16.1%(14명), 50대가 12.6%(11명), 10대와 60대는 각각 3.7%(3명), 5.7%(5명)임.

나. 외국인 범죄피해의 가해자 관련 특성

-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는 남편이나 직장 상사 등 범죄피해 이전에 알고 지내던 관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2015년과 2016년에 ‘범피센터’로부터 지원 받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87명) 중에는 가해자가 남편이라고 보고한 경우가 22명(25.3%), 직장 관련(상사, 동료, 고객 등) 인물인 경우가 18명(20.7%), 동거인(전애인 포함)인 경우가 7명(8.0%)로서 54% 정도를 차지함.
 -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28명(32.2%)이고, 이외에 7명은 무응답임.
- 2)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대상 사례 중에서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는 75%(65명)이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23%(20명)이고, 나머지 2명은 가해자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음.
 -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피해에서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피센터’의 지원 사례 중에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20명(23%) 포함되어 있음.
 - 가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8.5%(77명), 여자가 2.3%(2명). 미상이 9.2%(8명)임.

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및 피해정도

가. 피해범죄의 유형

- 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의 유형은, ‘폭행 및 상해’가 전체 사례의 54%(47명)로서 가장 높고,
- 2)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 20.7%(18명), 성폭력이 8.0%(7명), 살인미수가 6.9%(6명), 살인이 5.7%(5명)임.

나. 피해정도

- 1) 조사된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5명(5.7%)이며, 장해·중상해인 경우는 7명(8.0%)이고
- 2) 상해인 경우는 72명(82.8%)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해의 비율이 가장 높음.

4.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가. 범죄피해 지원 의뢰자는 경찰이 압도적

- 1) 범죄피해 지원 의뢰처가 경찰인 경우는 59명(63%)으로 가장 높음.
- 2) 본인이 직접 범죄피해 지원을 의뢰한 경우는 9명(10%)이고, 검찰이 의뢰한 경우는 7명(8%)이며, 기타 다른 기관이 의뢰한 경우는 8명(9%)임.

나.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

- 1)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죄피해자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지 8명(9%)에 불과함.
- 2)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상해진단이 5주 이상인 사례로서 치료비 액수가 큰 사례에 해당함.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 1) 2015년과 2016년도에 전국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범피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는 84명으로서 전체의 97%에 해당하고, 3명은 ‘범피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지 못함.
- 2) 3명의 사례 중에서 1명은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 57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명의 사례는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3) 외국인이 가해자인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개별 ‘범피센터’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 일부 센터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아닌 지자체 보조금이나 센터 자체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4)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에, 최소한의 장례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유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비가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임. 개별 센터별로 유족인 자녀에게 소액이나 학자금 지원을 연계한 경우가 있음.
- 5)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장해·중장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긴급생계비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간병비가 지원된 사례도 있음.

정책방안

1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접근성 확대

-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성 및 피해 지원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고지와 안내가 중요한 역할을 함.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¹⁾에도 ‘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지정·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 이전에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함.
-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 외국인의 국내 거주인구비율은 4% 정도인데 비하여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0.7~0.8%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범피센터’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와 홍보, 통역의 제공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 현재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끼리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1) 대검찰청 예규 제777호(2015. 4. 16 개정).

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은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해당 범죄의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해야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²⁾의 개정 필요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해당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2) 대검찰청 예규 제906호(2017. 11. 6. 개정).

요약

1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6년 이후 전국 주민등록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로 함)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5년, 2016년 외국인 범죄피해자 신규접수인원은 각각 97명과 77명으로서 전체 신규접수인원(2015년도: 11,359명, 2016년도: 11,385명)의 0.8%, 0.7% 수준에 머무름.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41%), 2016년도에는 47명(61%)에 불과함.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의 강화
 -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성 및 피해 지원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 ‘범피센터’ 안내 및 연계 강화
-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끼리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해야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함.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제2차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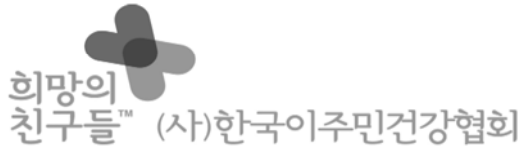
이주민 의료문제와 지역사회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처장

이주민 의료문제와 지역사회

이애란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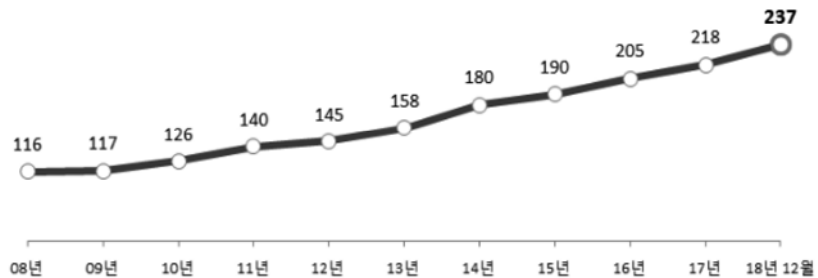
목 차

1. 이주민 체류 및 고용 현황
2. 이주민 사회보험제도
3. 이주민 건강실태
4.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도
5.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1. 이주민 체류 및 고용 현황

체류 이주민 증가 추이

(단위: 만 명)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단위: 천 명, %)

	15세 이상 인구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D-4-1, 7)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외국인	전체 (구성비)	1,300.8 (100.0)	262.3 (20.2)	209.7 (16.1)	37.2 (2.9)	121.3 (9.3)	306.7 (23.6)	104.0 (8.0)	108.6 (8.3)	150.8 (11.6)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지역별

<거주 지역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 명, %)

	15세 이상 인구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인천	경기	경기도						
이민자	전체 (구성비)	1,353.0 (100.0)	859.7 (63.5)	319.9 (23.6)	539.8 (39.9)	73.0 (5.4)	466.9 (34.5)	493.3 (36.5)	141.1 (10.4)	142.2 (10.5)	84.9 (6.3)	87.0 (6.4)	38.1 (2.8)
외국인	전체 (구성비)	1,300.8 (100.0)	830.0 (63.8)	308.5 (23.7)	521.5 (40.1)	69.5 (5.3)	452.0 (34.7)	470.7 (36.2)	135.2 (10.4)	136.5 (10.5)	81.1 (6.2)	81.8 (6.3)	36.0 (2.8)
귀화 희가자	전체 (구성비)	52.3 (100.0)	29.7 (56.8)	11.4 (21.8)	18.3 (35.0)	3.5 (6.7)	14.9 (28.5)	22.6 (43.2)	5.9 (11.3)	5.7 (10.9)	3.8 (7.3)	5.1 (9.8)	2.1 (4.0)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취업자 전체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이민자	918.8	50.6	417.7	416.1	113.4	173.6	15.0	148.4
외국인 (구성비)	884.3 (100.0)	49.5 (5.6)	404.9 (45.8)	403.3 (45.6)	110.7 (12.5)	163.2 (18.5)	14.2 (1.6)	141.8 (16.0)
남자	590.3	35.2	317.0	315.5	103.3	55.9	8.6	70.4
여자	293.9	14.3	87.9	87.8	7.4	107.2	5.6	71.4
귀화허가자 (구성비)	34.6 (100.0)	1.1 (3.2)	12.8 (37.0)	12.8 (37.0)	2.8 (8.1)	10.5 (30.3)	0.8 (2.3)	6.6 (19.1)
외국인	834.2	48.3	382.9	381.6	90.3	154.7	9.5	148.4
'17년 5월(A)	834.2	48.3	382.9	381.6	90.3	154.7	9.5	148.4
'18년 5월(B)	884.3	49.5	404.9	403.3	110.7	163.2	14.2	141.8
증감(B-A)	50.1	1.2	22.0	21.7	20.4	8.5	4.7	-6.6
증감률	6.0	2.5	5.7	5.7	22.6	5.5	49.5	-4.4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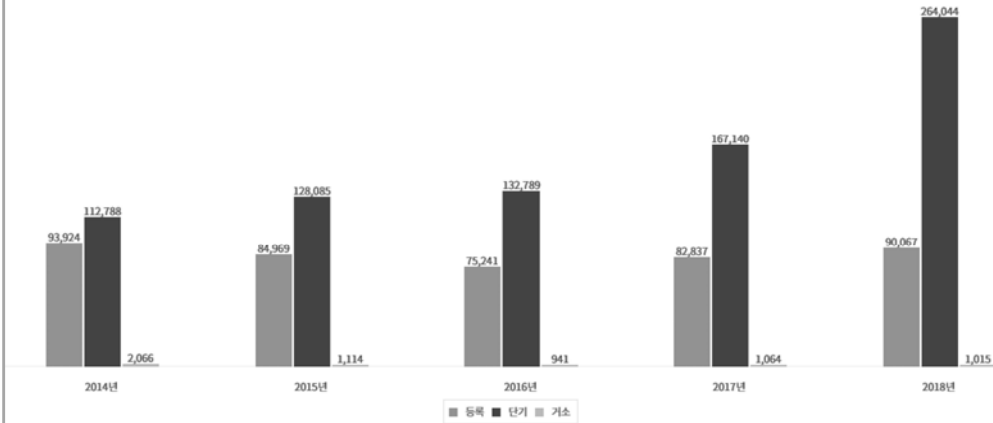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취업자 전체	4명 이하	5~9명	10~29명	3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이민자	918.8	170.7	197.8	263.9	96.0	164.0	26.5
외국인 (구성비)	884.3 (100.0)	160.2 (18.1)	191.3 (21.6)	256.1 (29.0)	93.5 (10.6)	157.9 (17.9)	25.2 (2.8)
남자	590.3	78.6	124.0	193.6	69.2	107.7	17.4
여자	293.9	81.7	67.3	62.5	24.3	50.2	7.9
귀화허가자 (구성비)	34.6 (100.0)	10.4 (30.1)	6.5 (18.8)	7.8 (22.5)	2.5 (7.2)	6.1 (17.6)	1.3 (3.8)
외국인	834.2	160.3	179.1	265.9	69.7	130.0	29.1
'17년 5월(A)	834.2	160.3	179.1	265.9	69.7	130.0	29.1
'18년 5월(B)	884.3	160.2	191.3	256.1	93.5	157.9	25.2
증감(B-A)	50.1	-0.1	12.2	-9.8	23.8	27.9	-3.9
증감률	6.0	-0.1	6.8	-3.7	34.1	21.5	-13.4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미등록 이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 통계 2018년 12월말

2. 이주민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시기, 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정 주요 내용

내용	개정 전	현행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국내 체류 3개월 이상 체류 시 임의가입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체류시 당연가입
가입자격 확대	인도적체류자 지역보험 가입 불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 지역보험 가입 가능
정보조회	보험료 납부와 체류자격 연동 없음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보험료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 보험료 체납시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변경 및 연장시 불이익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방문동거(F-1), 거주(난민인정자 포함)(F-2), 영주(F-5), 결혼이민(F-6)	영주(F-5), 결혼이민(F-6)
소득파악인 가능한 자	외국인: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F-4(재외동포):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말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2019년110,050원)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자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난민	난민인정자: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 부과	난민인정자(F-1, F-2), 인도적체류자(G-1): 30% 감면
보험료 감면대상자	D-6(종교): 30% 감면 D-2(유학) 및 D-4(일반연수): 50% 감면	동일
가족관계 증명서류	자국 대사관 발급 문서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보건의료 관련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대상) ① ② 항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자격 및 가입 기간, 국내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근로자건강관리지침

거주 지역 보건소

결핵, 에이즈 등에 대한 무료 검사

보건소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 무료 진료

미등록 아동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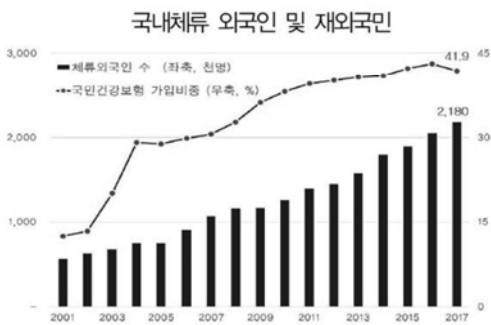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검사와 철분제 제공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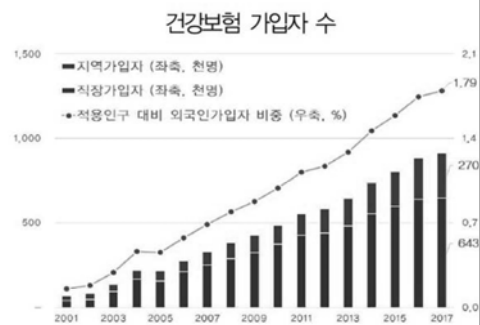
-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9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산전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아동 외래진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3. 이주민 건강실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 법무부(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건강보험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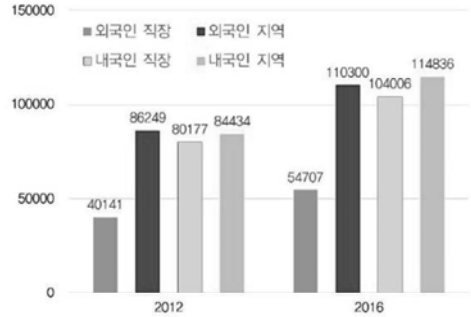
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

(단위: 억 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단위: 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유·무별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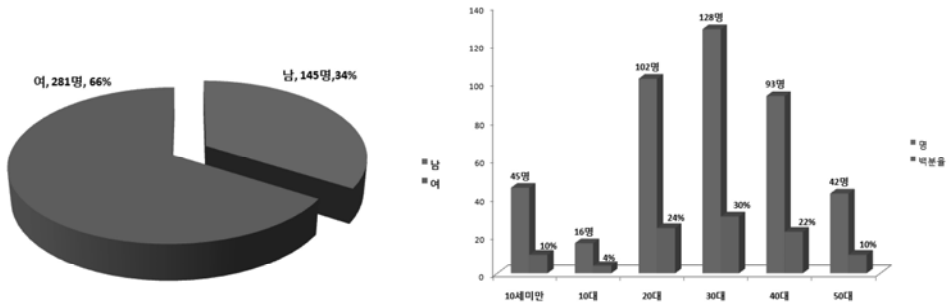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외국인	100.0	35.6	52.6	11.8	62.4	29.1	8.5
남자	100.0	37.0	51.7	11.3	69.7	22.7	7.6
여자	100.0	32.9	54.5	12.6	47.3	42.3	10.4
귀화허가자	100.0	57.5	38.5	4.0	57.5	36.5	6.0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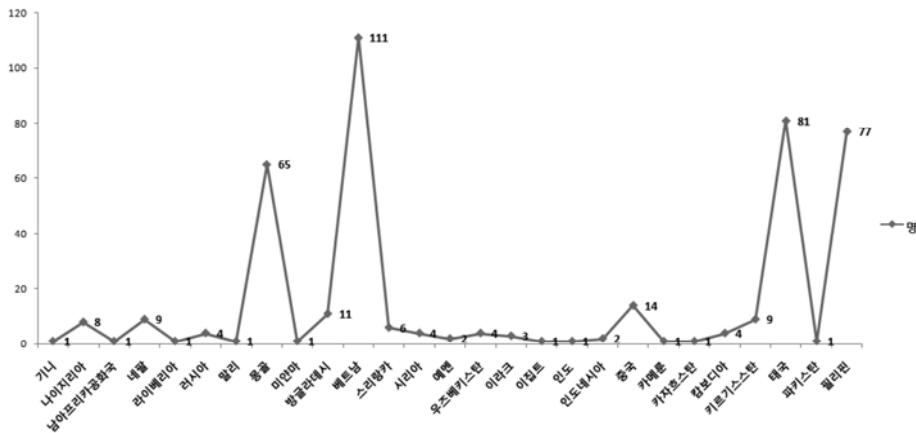
민간의료지원 통계로 본 의료지원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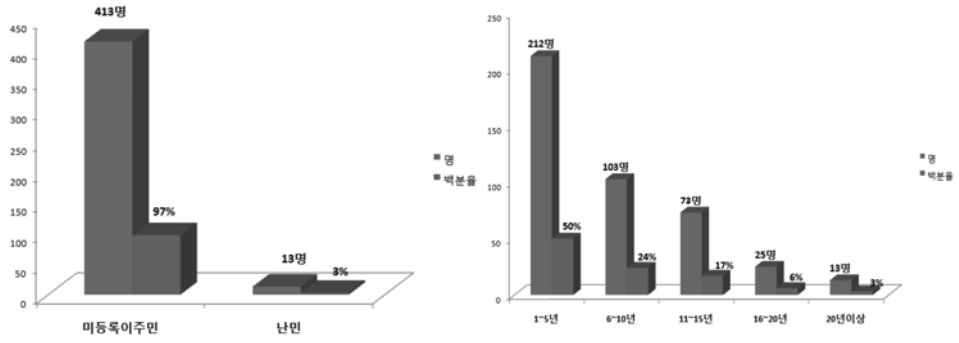


자료- 희망의친구들 2018년 의료지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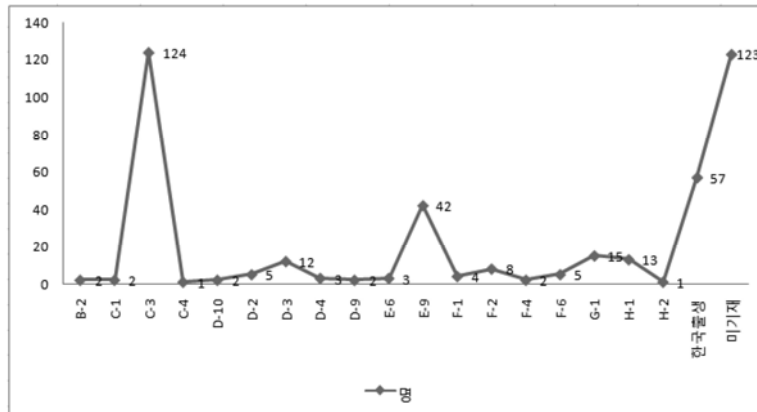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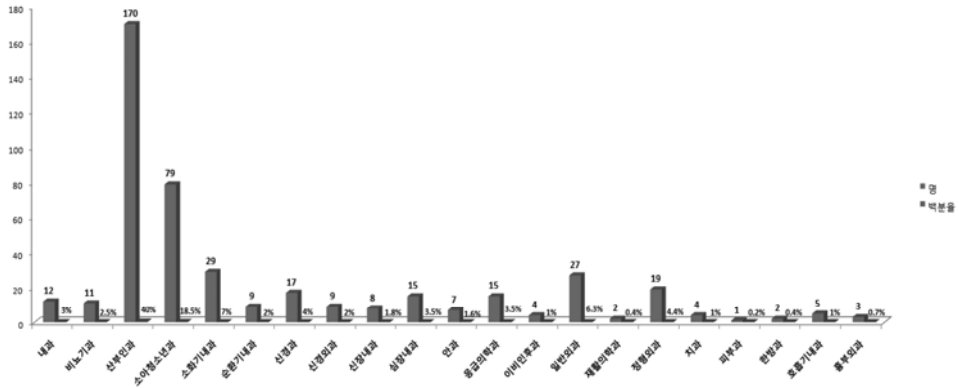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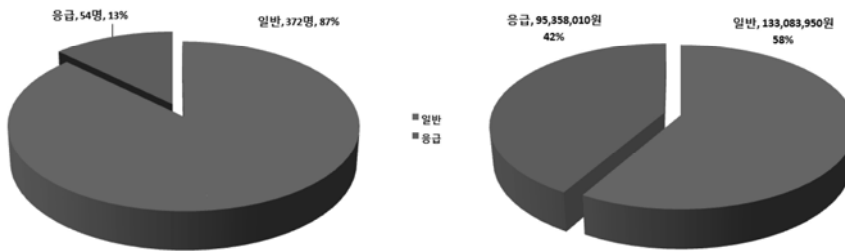
입국시 비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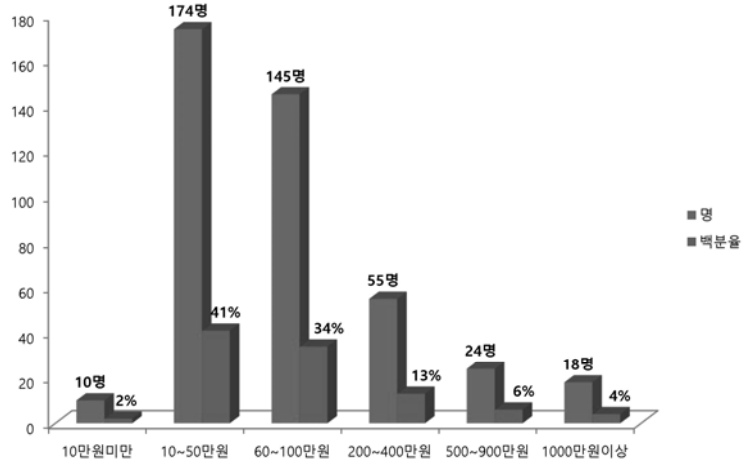
진료과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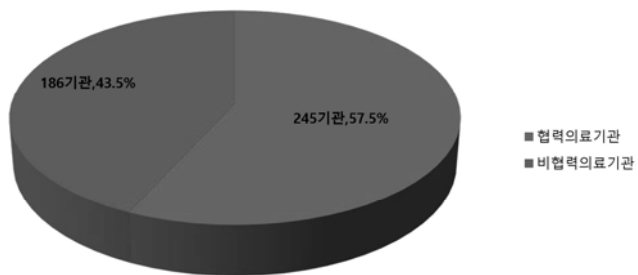
응급지원



이주민 의료비부담



치료기관 협력유무



국내 이주민 주요 의료문제

- 의사소통 문제 - 증상설명, 치료과정 이해문제
- 건강정보와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과 연계 어려움
- 치료비 부담
- 간병 문제
- 만성질환 관리 문제
- 정신건강문제- 한국사회 적응문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문제점

- 의료사각지대 확산
- 비노동 이주민 의료보장성 취약
- 의료접근성 저하
- 건강불평등 심화
- 사회적 비용 증가
- 체류 불안정

4.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시도

안산시

-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 외국인진료 사업
- 일요일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
- 첫째, 셋째, 넷째 주 내과 등 8개과 진료와 건강검진 진행
- 이용대상: 거주지, 체류자격, 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에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시 이용 가능
- 의료통역지원: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3개국 3~4명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 배치

고양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문화분과

2014년부터 관내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 주목, 대안 마련 논의 시작

2014년~2017년

-미등록이주민 무료진료 로드맵 작성

-미등록이주민 무료진료 시행지역자원 현황 조사

2018년

-미등록이주민 무료진료 체계적 운영 및 안정화

-지역자원연계

2019년

-미등록이주민 상설 의료기관 운영

화성시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

2017년부터 무료진료와 건강실태조사 진행

2019년 화성시보건소에서 외국인 건강 검진 및 관리사업

격월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사업명: 광주이주민 건강센터 및 유학생 의료지원

2016년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이주민건강센터 운영지원
광주시의 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 '시정현안 해결협의체' 부문에서 노동정책TF
우수상 받음.

2005년 민간단체인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가 지역 의료단체, 병원들과 함
께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대상 무료진료 활동 시작.

이용대상: 이주노동자·이주여성·새터민 등 의료 사각지대 소외계층 이주민
진료내용: 치과진료, 일반진료, 한방진료
의료상담, 건강교육, 심리상담

시사점

- 민관 협력으로 공공영역에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이주민 건
강관리 방안 마련
- 지자체별 이주민 건강정책 마련
- 대부분 주말 1차진료 중심으로 중증질환자 치료연계 어려움
-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과 차별성이 없음
- 근본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없어 건강권 보호 방안 미흡

5.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

1.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민 보건의료정책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이주민 보건의료정책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반영
 -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이주민 건강정책 수립
 - 이주민 차별적인 건강정책 개선

2. 현행 사회보험 적용 강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미준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와 고용제한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

3. 의료취약계층 이주민 건강권 보호 확대

- 현행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대상에 이주민 포함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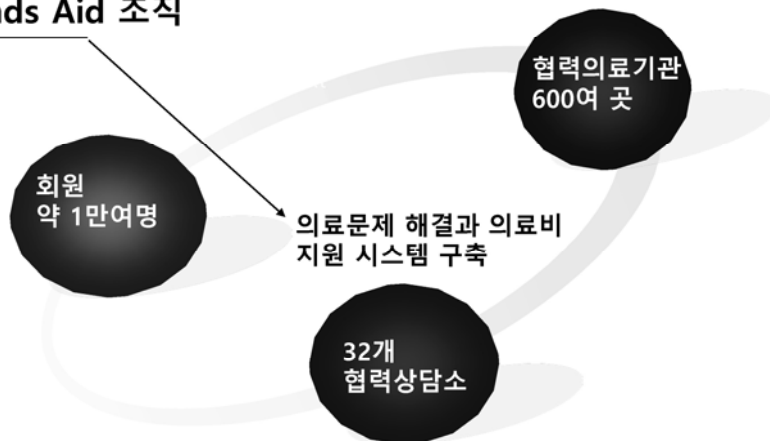
1. 이주민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 지원

- 의료통·번역지원
- 다국어건강정보센터 운영
- 이주여성 모성보호 사업 마련
- 이주노동자 산재환자 재활치료 지원
- 이주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 취약계층 이주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WeFriends Aid (이주민 의료공제회)

WeFriends Aid 구성과 운영

WeFriends Aid 조직



의료소외계층 이주민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WeFriends Aid 운영 변화					
연도	가입자격	가입비(원)	회비(원)	의료지원범위	비고
1999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자녀, 난 민, 무국적자	5,000	5,000		
2003		5,000	6,000		회비 인상
~ 2008					
2009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건강보 험 가입이 안된 이주노동자와 자녀, 유학생, 난민, 무국적자	10,000	6,000	1. 응급의료비 2. 입원수술비 3. 분만비 4. 외래진료비 및 약값지원	9월1일부터 합법체류자까 지 확대 적용
2016	건강한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중(입국일 6개월경과) 체류상 태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및 타 이주민의료공제회 가입이 안 된자와 자녀, 노동을 하는 유학생, 난민, 무국적자 F-4 및 H-2에서 F-4로 전환 한 이는 회원가입불가	10,000	10,000	5. 산전산후검사비	의료지원범위 확대, 피부양자 확대 1명-> 2명(2명시 회비15,000원)
2018년 12월 말 현재 10,223명 회원 가입					

협력 의료기관

구 분	유 형	의뢰내용 (의료기관의 할인 및 청구금액)
1차 의료기관	1차 외래	진찰료, 처방료 - 정액 5,000원 검사 - 의료보험 100% 적용
	한의원	의료보험 적용 진료 - 정액 5,000원 기타 요법 및 처방 - 할인
	치과의원	기본진료 (진찰료, 처방료) - 정액 5,000원 비보험 - 50% 감면(나머지 50% 본인부담)
	입원 및 수술	의료보험 수가 100%적용
종합병원	2차 진료기관	의료보험 수가 100%적용
	3차 진료기관	의료보험 수가 100% 적용과 특진료 50% 감면
약국		약값의 원가 본인 부담(조제료 할인)

**이주민이 건강한 사회,
한국인도 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www.wefriends.org we@wefriends.org
전화: (02) 3147-0516~8 팩스: (02) 3147-0519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제3차 포럼]

결혼 이민자 여성의 전혼 자녀 입양

: 현황과 쟁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혼 이민자 여성의 전혼 자녀 입양: 현황과 쟁점

신윤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연구 배경

PAGE 3.

- 다문화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혼인 유형은 변화되고 있음
 - ✓ 재혼 부부 중에서 남편(재) + 아내(초)는 감소하고 남편(초) + 아내(재) 증가

<그림 1> 다문화 혼인 건수 및 다문화 비율 추이



<표1> 다문화 혼인 중 남편과 아내의 혼인 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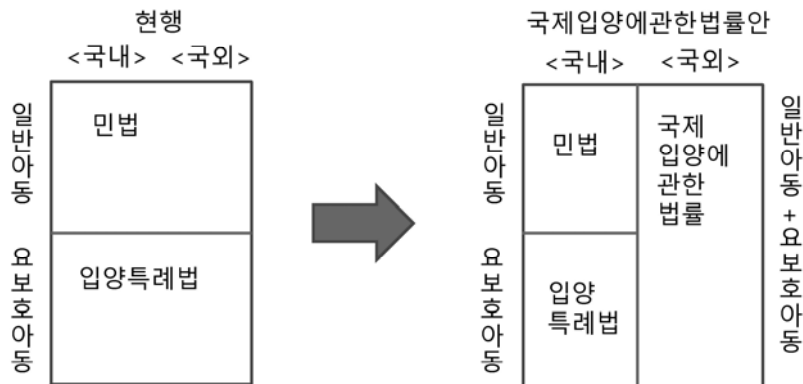
구분	아내 (외국인귀화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초)+아내(초)	56.0	52.9	54.9	56.0	55.3	54.7	55.7	56.5	55.5
남편(초)+아내(재)	8.5	9.2	9.2	9.1	10.1	10.9	11.9	12.7	13.5
남편(재)+아내(초)	16.6	16.2	15.9	16.4	15.3	14.8	13.2	12.9	13.0
남편(재)+아내(재)	19.0	21.7	20.1	18.5	19.3	19.7	19.2	17.8	18.0

(단위: %)

자료)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통계(2011, 2014, 2017)



- 우리나라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서명 (2013년 5월 24일)
 - ✓ 협약 대상: 양부모와 양자가 상거소를 달리하는 경우 혹은 국적이 다른 경우(국내 정의)
- 재혼 다문화 가정 및 결혼 이민자 여성의 본국 출생 아동 입양 증가
 - ✓ 전혼 자녀를 입양한다는 측면에서 “민법상 입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외국 아동의 국제 입양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은 미약한 상황 (중도입국자녀의 입양 경험 등)
- 현재 세 가지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 김승희 의원 안(2016. 9.23), 남인순 의원 안(2018. 12.5), 김세연 의원 안(2019. 7.15)



• 연구 목적

- ✓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 오는 아동의 이슈와 현황 분석
- ✓ 협약의 정신에 부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입양 정책의 청사진 제공
- ✓ 외국 입양 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요 연구 내용

- ✓ 외국인 입양 아동의 통계 현황
- ✓ 외국인 입양 아동에 대한 국내 입법 체계 및 체류 자격
- ✓ 외국인 자녀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 ✓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에서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



- 외국 아동이 한국에 입양되는 공식적인 집계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법상 입양 부모 교육을 받는 다문화 가족의 현황 통계 (2018년 1월 부터 구축)
 - ✓ 연간 총 외국 입양 아동 수는 약 406건으로 추정
 - ✓ 입양 신청의 기각을 고려할 때 총 입양 신청 건수는 400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표 2-18) 민법상 입양 부모 교육 다문화 가정 참석자 현황(2018년 1~11월)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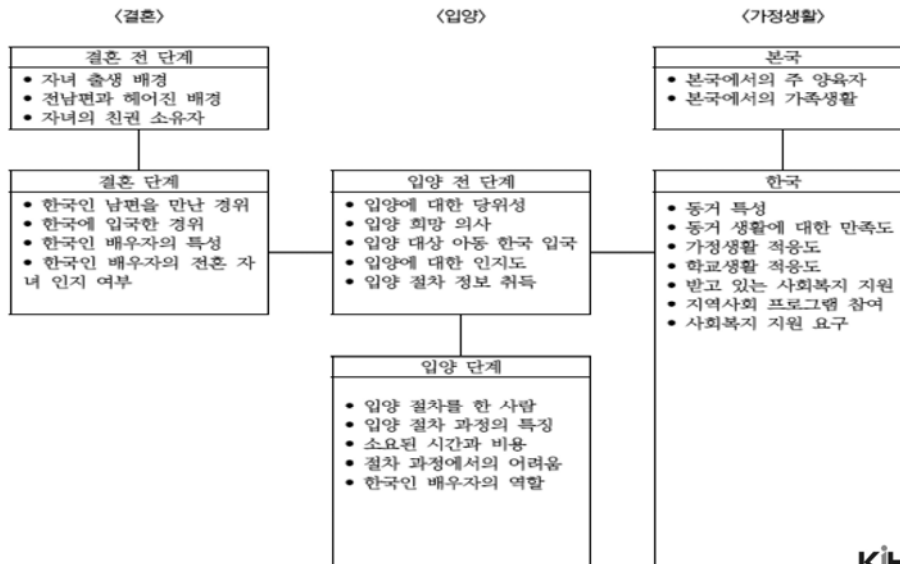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계
서울	16	15	14	18	13	18	27	40	27	39	38	265
지방	7	6	5	12	7	13	11	14	12	10	10	107
계	23	21	19	30	20	31	38	54	39	49	48	372



- 결혼 이민자 여성의 전혼 자녀는 입양 전 후에 국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함
 - ✓ (입양 전) 특례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
 - ✓ (입양 후) “국민의 자녀”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
- 외국인 입양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기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필요
 - ✓ 국적법상 특별 귀화 대상이 되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 평가에서 면제됨
 - ✓ 15세 이하는 면접 심사에서 면제, 15세 이상은 면접 시험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국내 사회보장제도들은 한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큼
 - ✓ 원칙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음
 - ✓ 국기초 보장 가구원에서 배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아동 수당 지급에서 배제

- 가족 내 입양도 협약의 범위에 해당되어 협약이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함
 - ✓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
 - ✓ 협약 당사국의 사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외 허용
예) 사후 관리에 대해 일반 아동에 비해 다소 덜 엄격한 규정 적용
- 국제 입양된 아동의 국적에 대하여 세가지 원칙 적용
 - ✓ 아동이 무국적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 ✓ 아동이 입양 부모의 국적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아동과 입양 가족의 통합 도모
 - ✓ 국적 취득에 있어서 국제 입양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 목적: 외국인 아동 입양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 강구
- 면접 대상: 입양 대상 아동을 가진 결혼 이민자 여성 32명 (25명 조사 완료)
- 면접 방식: 조사표를 활용한 자기 기입식 방식과 심층 면접 병행
- 대상자 섭외: 다문화 가족 혹은 청소년 관련 기관 섭외를 통한 눈덩이 표집
- 조사 기간: 2018년 9월~11월
- 주요 조사 항목
 - ✓ 결혼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입양 자녀의 일반 특성
 - ✓ 결혼 단계- 입양 단계 -가정 생활 관련 사항
 - ✓ 지역 사회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사회복지 지원 요구



- 결혼 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전혼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의 자로 입양하는 것을 희망

(단위: 명)

항목	구분	빈도 (명)
입양 당위성	입양해야 함	24
	입양하지 않아야 함	1
	무응답	0
	해당 없음	0
입양 희망 의사	입양을 원함	23
	입양을 원하지 않음	1
	무응답	1
	해당 없음	0
전체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자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게 좋다고, 애기는 엄마가 키워야 더 좋다고”
 “베트남 보다 한국 교육이니 자녀가 받는 정보도 더 안전하고”
 “내 자식인데 등록되어 있는 게 나라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아동은 입양 전에 동반 자녀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대부분 한국에 거주

(단위: 명)

입양 특성	거주지	
	본국	한국
입양 전	2	4
입양 단계	0	9
입양 후	0	10
계	2	23

“처음에 입양하러 오는 거 아니고 방문 목적으로 왔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까다로워서 애 때문에 이 서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방문 비자로 왔는데 알아 보니까 3번 밖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입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은 매우 낮음

(단위: 명)

항목	구분	빈도
입양 절차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음	10
	모르고 있음	15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	들은 적 있음	16
	들은 적 없음	9
전체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일단은 주위에 비슷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알게 되었고”
 “요즘엔 너도 나도 데려와서 되는 것인 줄 알고 이제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했던 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 입양 절차는 통일된 체계나 공공 기관의 감독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 외국인의 한국 체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사무실 혹은 개인

(단위: 명)

항목	구분	빈도
입양 절차를 맡아서 한 사람	결혼 이민자가 직접	1
	한국인 배우자	10
	한국인 배우자 가족	-
	행정 사무소	8
	해당 없음	6
전체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여기 여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행해 주는 데가 많아요. 다 하죠 돈 만 주면 다해요. 거기 여행사는 법무사 끼고 다 해요”
 “결혼 서류 준비할 때 그 사무실이 해 줬어요. 요즘엔 그런 거 다 같이 하잖아요. 결혼 부터 이혼 절차, 입양까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 입양 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약 300~400만원으로 나타났음
 - ✓ 비용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없음
 - ✓ 요구하는 비용에 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서류 대행 등 매우 한정적임

"300만원 정도"

"입양할 때는 200만원, 국적은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 정도"

"말 그대로 중간에서 수수료 받아먹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냥 서류만 대행해 주는 "

"이거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가져오고, 남은 신청서나 사유서 서류는 그쪽에서 해주고"



- 외국 아동 입양 가정은 입양 절차 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움에 직면
 - ✓ 서류 마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단위: 명)

항목	구분	빈도
입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어려움 있음	9
	어려움 없음	12
	해당 없음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움	받음	18
	받지 않음	1
	무응답	2
	해당 없음	4
전체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베트남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서류 날짜가 지나 버려요 "

"입양하는 절차가 뭐가 필요한지 준비해야 될 것 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서류 해 주는 사람도 짜증 내서 이야기를 잘 못한다고. 서류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베트남에서는 돈 주면서 하면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 외국 입양 아동이 국제적으로 재구성된 가정 내에서 힘든 과업에 직면
 - ✓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의 적응 및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파악 필요

(단위: 명)

구분	항목	빈도	
입양 자녀의 적응도	가정생활	잘 적응하지 못함	2
		잘 적응함	19
	학교생활	잘 적응하지 못함	4
		잘 적응함	16
전체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엄마는 동생에만 관심 있지 나는 무관심하냐고, 나 생각한 적 있냐”
 “자기도 베트남 친구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우면 한국이 싫고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되고 한국 음식도 못 먹었어요”
 “교육 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는 외국인이라서 그런 부분은 못 챙겨주고”



- 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실제 수혜 경험 및 참여도는 저조하였음
 - ✓ 한국어 교육 등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음

(단위: 명)

구분	항목	빈도	
사회복지 지원	받고 있는 사회복지 지원	없음	10
		받지 않음	10
		무응답	1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참여한 적 있음	4
		참여한 적 없음	17
		있음	14
받고 싶은 사회복지 지원	없음	5	
	무응답	2	
전체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입양 부모 대상 심층 면접 조사」

“외국인 자녀 언어 발달 교육 받고 다른 건 없어요”
 “아직 한국 국적 취득 안 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혜택 못 받았어요”
 “둘 다 시간이 없고 그런 프로그램 어디서 진행하는지 정보가 없어서”



- 두 법률안 모두 “계자 입양” 보다는 “요보호 아동” 측면에서 양부모 기준 제시
 - ✓ 요보호 아동 입양: 원가정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아동 보호 조치
 - ✓ 계자 입양: 친부 혹은 친모의 배우자에게 양모 혹은 양부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원가정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
- 양부모 적합성 판정에서 소극적 심사 필요
 - ✓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동을 친생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 양부모 될 자의 부적격 사유가 미성년 자녀의 가족 결합권을 제한할 정도에 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심사할 필요
- 요보호 아동의 양부모 조사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되,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입양 동기 및 가족 환경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 성립: 출신 국가의 승인 + 국내 가정 법원의 허가
 - ✓ 두 법률안 모두 외국인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 성립은 출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혹은 중앙 당국의 승인으로 성립되도록 하면서, 수령 국가의 법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2019. 3)」
 - ✓ 협약은 출신 국가가 해당 입양이 협약에 따라 행해졌다고 증명하는 경우에 법률의 효력으로서 입양 승인을 인정하고 있음
 - ✓ 출신 국가가 입양 성립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체약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 출신 당국의 승인과 더불어 우리나라 법원의 추가적인 입양 승인 절차
 - ✓ 입양 대상 아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 출산 국가의 중앙 당국이 원가정 보호라는 이유로 한국의 양부모와 가족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을 승인할 가능성 있음



- 외국 아동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로 입양 온 아동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
 - ✓ "입양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 ✓ "입양과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로 귀화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가능한 두 가지 절충안
 - ✓ 기본적인 사회 보장권은 부여하되 국적 취득은 귀화를 통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 ✓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

- 두 법률안은 모두 국제 입양 아동에 대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 그러나 외국으로 입양 간 아동에게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로 입양 온 외국 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 가정에 입양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전혼 자녀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적 과업
 - ✓ 청소년기에 중도입국자녀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혹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 ✓ 양부와 양부의 자녀들로 재구성된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 함
- 외국인 입양 자녀를 위한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 ✓ 다문화 재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 기능과 가족 관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 외국 입양 아동의 언어 생활, 학교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입양 기관의 외국인 아동 국내 입양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필요
- 국제 입양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지녀야 할 요건
 - ✓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과 소양
 - ✓ 국제 입양 업무에 대한 노하우
 - ✓ 다문화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식견
 - ✓ 출신 국가의 국제 입양 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및 네트워크
 - ✓ 출신 국가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감사합니다

2019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최종 포럼

[제4차 포럼]

선량한 차별주의자

: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김지혜

작가



선량한 차별주의자: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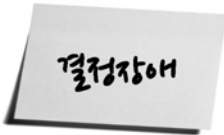
김지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 2019. 5. 11. ○○ 시장의 축사 중에서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다. ‘당신들은 잡종이다’고 말한 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



“왜 뭐가 문제지?”
“비하할 의도는 아니었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병신’(장애인), ‘흑형’(흑인), ‘짱깨’(중국인), ‘왜놈’(일본인), ‘똥남아’(동남아인), ‘똥꼬충’(동성애자), ‘지잡대’(지방대학), ‘급식충’(아동청소년), ‘들딱충’(노인), ‘맘충’(엄마)

“희망을 가지세요.”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

알아채기 [어려운/쉬운] 말들

차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 | 소수
사소함 | 모멸감
정당함 | 부당함
피해자의 문제 | 가해자의 문제

평범한 사람들의 '특권'

백인 특권

- 내가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피부색을 가지고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거의 틀림없이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 나는 내 외모, 행동거지, 냄새로 나의 인종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신경 쓸 일이 없다.
- 내가 리더로서 신용이 낮다면 그 이유가 인종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남성 특권

-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다고 해서 나의 성별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을 만날 것이 거의 분명하다.
- 내가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내가 승진에 자주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성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 최규석 『송곳』
그런데 우리는 한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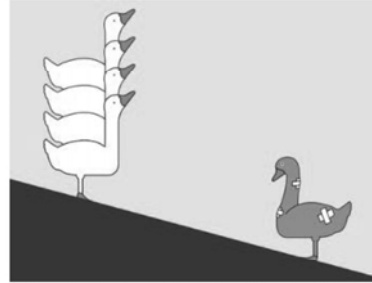
호모 카테고리쿠스 (성별, 나이, 직업, 지역, 종교, 학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상황 등)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아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내' 머릿속 그림

내부집단: 복잡하고 다양하고 인간적으로 보임

외부집단: 단조롭고 균질하고 덜 인간적으로 보임

집단은 어떻게 생기나? 임의적/ 유동적 경계



"Untitled, Harlem, New York, 1947" Gordon Parks/The Gordon Parks Foundation.

자신에게 불리한 고정관념도 내면화된다.
의식적으로 편견에 맞춰 행동하기도 한다.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
철망은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선이 새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메릴린 프라이



구조적 차별은 우리의 감각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일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시야에 갇힌다.

차별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말, 생각, 감정들
-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



“웃자고 한 말에 왜 그래?”

왜 웃긴가?

우월성 이론 | ‘상급자-하급자’ 실험

누가 웃는가?

**편견규범이론 | 편견의 빗장을 풀어 차별을
용인하는 효과**

**가볍게 만드는 성질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

“이건 역차별이야!”

평등을 위한 변화가 역차별로 보일 때

어떤 실험
여성이 2%인 가상의 회사
새로운 채용정책 50%? 10%? 2%?
남성 | 여성



© 윤성표 / 오마이뉴스

“싫어하는 마음도 잘못인가요?”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
“손님들이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
“한국인 학부모들이 외국인 원생이 있으면 싫어해요.”

노키즈존, 장애인거부 등 공공시설에서의 배제
그런데, 누구를 거부하는가?

하트 오브 아틀랜타 모텔 대 미국(1964)

“[민권법] 영입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재산 침해다”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대중시설에서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하는 순간,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 민권법의 주요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차별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

-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 별개의견

“내 눈에는 안보였으면 좋겠어”



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http://sqcf.org/notice/177635>

“성소수자는 꼭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축제를 해야 하나요?”

“청소년이 여기에 있으면 안되지!”

“여자가 집이나 있을 것이지!”

“장애인이 굳이 돌아다녀야 하나요?”

공적 공간 | 사적 공간

그리스 아고라: 여성, 아동, 노예의 배제를 전제한 평등의 공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소수자'로 만드는 중요한 성질.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아고라에 입장하는 상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 ✓ 분할된 사회, 분리된 세계
- 모든 조롱과 오해와 배척의 시작
- ✓ 다양성을 '은폐'한 보편성 VS 다양성을 '포함'한 보편성
- 평등은 다양성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
- ✓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 VS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
- 어느 쪽의 고단함/수고로움을 택할 것인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캠페인 소개

차별금지법, 왜 아직 없죠?

2019년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국민은 원하는데 국회도 정부도 침묵!



진행 시간 21 12 07 38
현재 600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0%
목표 600 목표 6,000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모두에게 촉구하기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싸이 캠페인즈 <https://campaigns.kr/campaigns/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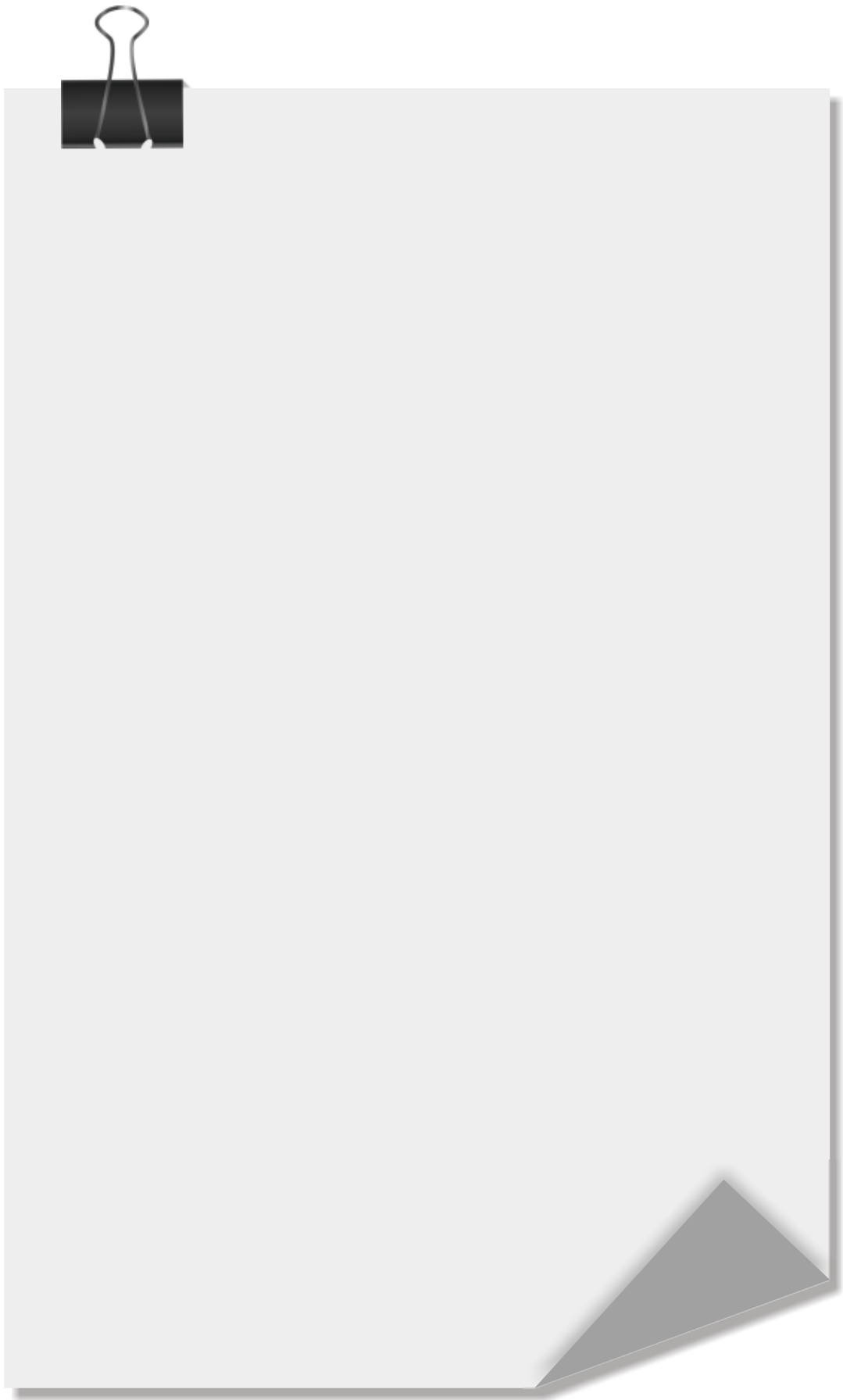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
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
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
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익숙한 질서 너머
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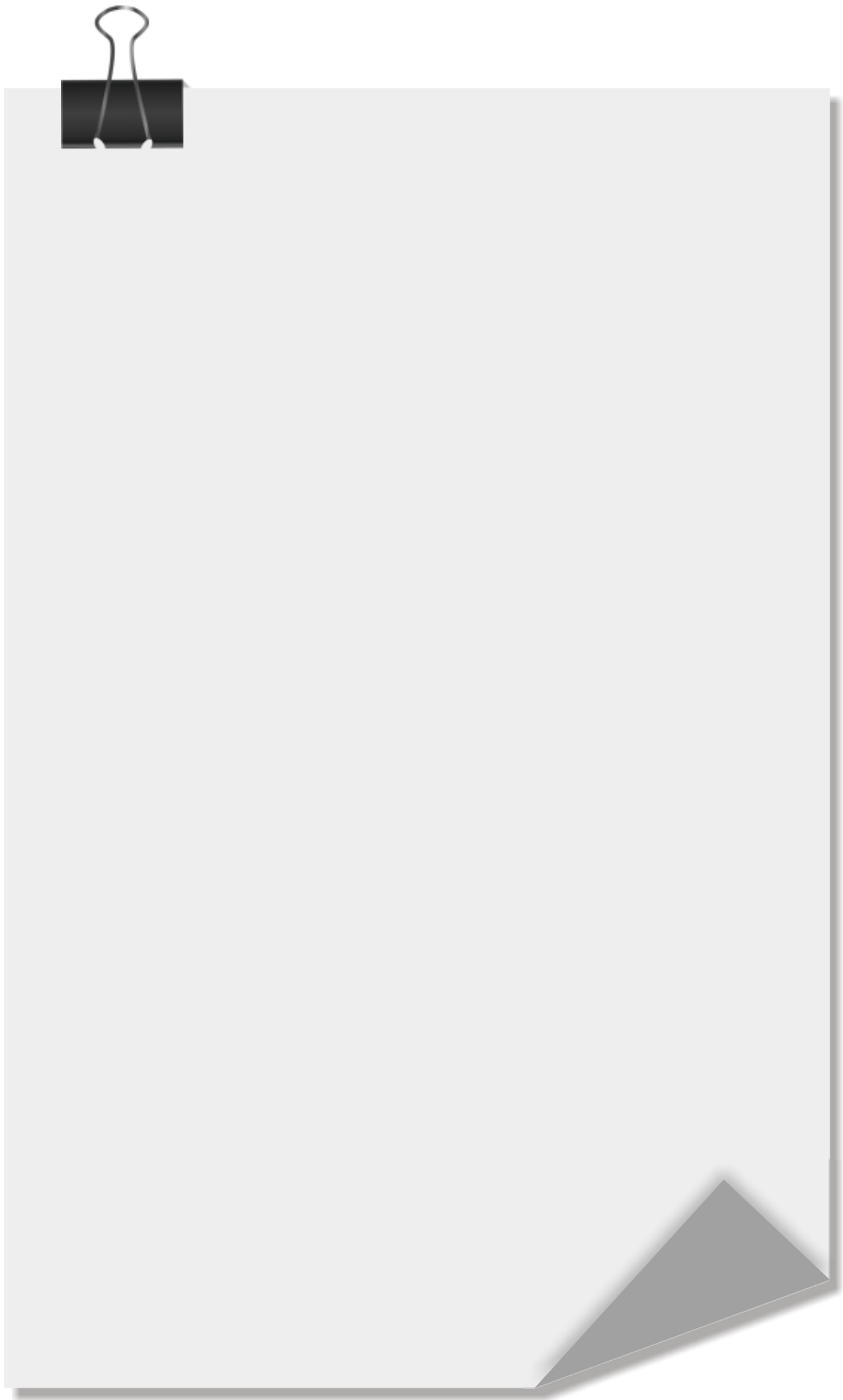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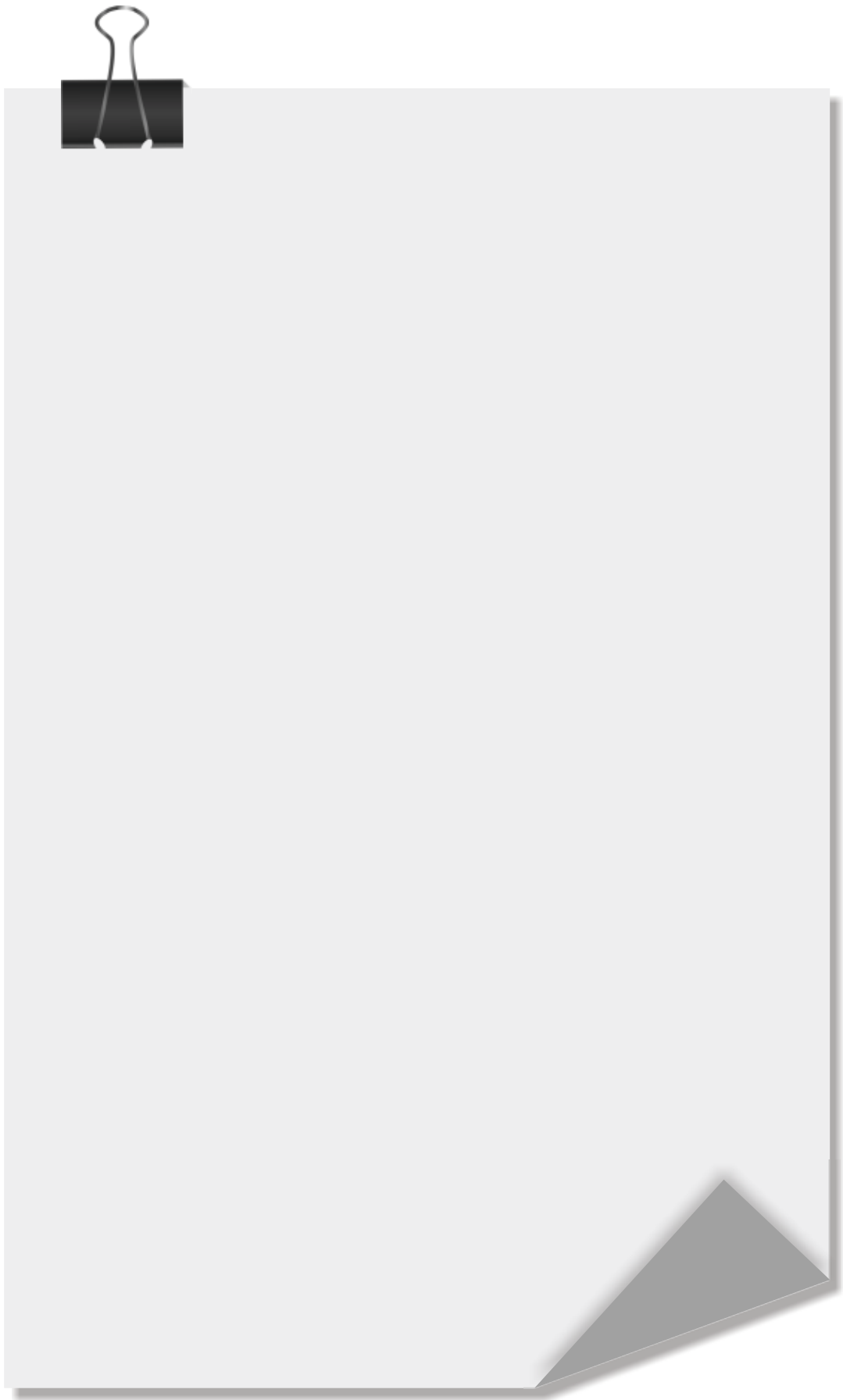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 031 492 9347 전송. 031 492 9349 누리집. www.gmhr.or.kr